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공공데이터법 및 데이터기반행정법에 따른 법정사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요 인력 2명(5급 2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12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26. ~ 11. 3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 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

별표 1 중 총계 “225”를 “22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23”을 “225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23”을 “25”로 한다.

별표 1의2 중 총계 “225”를 “227”로 하고, 일반직 계 “223”을 “225”로 하며,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“22”를 “24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) ① · ② (생략) ③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부위원장을 보좌한다. 1. ~ 6. (생략) <u><신설></u>	제6조(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1. ~ 6. (현행과 같음) 7. <u>금융분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</u> <u>를 위한 계획 수립·추진</u> <u>및 데이터 관리 등 총괄</u>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	급	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계	.		.	.	
			<u>225</u>	<u>227</u>	+2
	.		.	.	
	.		.	.	
일반직 계			<u>223</u>	<u>225</u>	+2
	.		.	.	
	.		.	.	
행정사무관		또는			
전산사무관			<u>23</u>	<u>25</u>	+2
	.		.	.	
	.		.	.	

■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[별표 1의2]

금융위원회 공무원 정원표(제18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	급	별	현	행	개정안	증 감
총계	.		.		.	
			<u>225</u>		<u>227</u>	+2
	.		.		.	
	.		.		.	
일반직 계			<u>223</u>		<u>225</u>	+2
	.		.		.	
	.		.		.	
행정사무관		또는	<u>22</u>		<u>24</u>	+2
전산사무관						
	.		.		.	
	.		.		.	